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심사 절차 완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의 협의 요청 기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추가

- 1) 묘지공원 및 장사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함)(안 별표2 제1호라목 및 제3호아목)
-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가 지원지방도, 광역도로(안 별표2 제2호나목)
- 3) 기존 국방·군사시설 중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

하는 시설(미리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경우에 한함) (안 별표2 제4호라목)

- 4) 교정시설 내 수용자시설(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
형질변경 면적 안에서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함)
(안 별표2 제4호자목)

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의 협의 요청 기한 명시(안 별표2 제6호)
국토교통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설치
주체(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완 기간은 제외)에 국토교통부에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건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정부세종청사 6동 4층,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750(3752) 팩스 : 044-201-5574